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안전계획 수립 확정 및 교직원 연수 미실시

관계기관 가산초등학교

내 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따라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 중 학교안전계획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산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계획 확정을 위한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학교안전 계획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미실시 한 사실이 있다.

[표] 2021학년도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교직원 연수 실시 현황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		학교안전계획 수립일		교직원 연수계획		비고
	내부결재일	문서번호	내부결재일	문서번호	내부결재일	문서번호	
2021	2021.02.17.	가산초-1711	내부결재 없음		미실시	-	

### [조치할 사항]

- ① 가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업무 처리 소홀

관계기관 가산초등학교

내 용

###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소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13058(2012.5.2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알림」,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1198(2023.1.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개정 알림」에 따라 2012.4.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 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1개월 이상 공사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현장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노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지급확인제 적용)

#### [참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

적용시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2012. 4. 2. 이후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023. 1. 9. 이후	· <b>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b> (단,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로 변경되는 경우 적용)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b>1일 이내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수선 공사</b>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도 가산초등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 실시 현황

계약명	계약금액(원)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공사기간)	준공일	비고
가산초 정문환경 개선공사	32,203,000	2020.11.06.~2020.12.15. (2020.11.06.~2020.12.15.)	2020.12.15.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교내 등나무 주변 조경조성공사	16,920,000	2021.02.08.~2021.02.28. (2021.02.22.~2021.02.25.)	2021.02.25.	지급확인제
가산초 보도블럭 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29,155,000 (23,944,690)	2021.11.10.~2021.12.09. (2021.11.12.~2021.12.09.)	2021.12.09.	지급확인제

## 2.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도 가산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현황

계약명	계약기간 (변경계약기간)	준공일	검사완료일	보증서 유형	기존하자담보 책임기간	정당하자담보 책임기간
가산초 정문환경 개선공사	2020.11.06.~2020.12.15.	2020.12.15.	2020.12.15.	보증서	2020.12.16. ~2022.12.15.	2020.12.15. ~2022.12.14.
가산초 보도블럭 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2021.11.10.~2021.12.09.	2021.12.09.	2021.12.22.	보증서	2021.12.09. ~2023.12.08.	2021.12.22. ~2023.12.21.
어린이놀이시설 모래교체 및 정비사업	2022.10.19.~2022.11.02. (2022.10.19.~2022.11.15.)	2022.11.15.	2022.11.15.	보증서	2022.11.16. ~2024.11.15.	2022.11.15. ~2024.11.14.

## [조치할 사항]

- ① 가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 다른 기관(관외)으로 옮긴 관련자에게는 현 소속 기관으로 처분(요구)함

일련번호	14-9
------	------

# 경기도 포천 교육 지원청

##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관계기관 가산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 교체 후 14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행정실장) 교체 후 7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산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장)이 교체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현황

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선출일	사무 인계인수 여부	비고
2021		2021.04.14.	X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 [조치할 사항]

- ① 가산초등학교장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 다른 기관(관외)으로 옮긴 관련자에게는 현 소속 기관으로 처분(요구)함